

## 보도자료

2012년 2월 27일(월)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통신정책국 통신정책기획과 이상학 과장 (750-2510)  
와이브로활성화팀 조병현 사무관 (750-2541) 224e6970@kcc.go.kr  
통신정책기획과 김재욱 주무관 (750-2514) dongto@kcc.go.kr

# 기초생활수급자 인터넷전화 월 450분 무료통화, 장애인·국가유공자는 통화료의 50% 감면

- 2.28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 -

방송통신위원회는 취약계층 요금감면 서비스에 인터넷전화를 추가하고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를 확대하는 한편, 이용자 보호 규정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28일에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취약계층 통신요금 경감, 이용자 보호 관련 규정 강화 및 별정통신사업 등록요건 완화 등을 위해 마련되었다.

우선, 내일부터 인터넷전화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와 월 450분 무료 통화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의 경우 월 통화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양육수당 및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차상위계층은 이동전화 서비스에 대해 가입비를 면제받고 기본료와 통화료를 합한 총 사용금액 3만원 한도에서 기본료와 통화료의 35%를 각각 감면받게 된다.

더 평화롭고 안전한 세계! 글로벌 코리아가 새로운 지평을 열어갑니다.

이에 따라 연간 77만 가구가 총 215억원(가구당 27,922원)의 인터넷 전화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양육수당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연간 5만5천명이 총 57억원(1인당 103,636원)의 이동전화 요금을 감면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간 취약계층의 통신이용 접근성 제고와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통신요금을 지속적으로 감면해 왔으며, 2011년의 경우 514만명에 대하여 5,637억원의 통신요금을 감면했다.

앞서는, 올해 1월부터 차상위계층도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이 신분증만으로 요금감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요금감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청방법도 다양화 했다.

요금감면을 받고자 하는 취약계층은 신분증을 가지고 대리점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공인인증서를 통해 집에서 직접 주민 서비스포털([www.oklife.go.kr](http://www.oklife.go.kr))에 접속하여 요금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통신비 감면 확대 시행과 신청 절차 개선으로 감면 대상자가 전년에 비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신규 지원대상자 등 취약계층이 제도를 알지 못해 요금감면을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TV·신문·포스터 등을 통해 각 지자체, 통신사업자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더 평화롭고 안전한 세계! 글로벌 코리아가 새로운 지평을 열어갑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가 무단가입, 부당과금 등으로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자에게 이용자에 대한 피해 사실 통지 및 원상회복에 필요한 자료보존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종래에는 사업자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등을 변경하여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이용자는 피해 사실을 모르거나, 관련 정보가 파기되어 피해 구제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이용자가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사업자의 신속한 손해배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설비 미보유 별정통신사업자의 기술인력 등록요건을 기술사, 기사 및 산업기사에서 기능사 이상으로 완화하여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하고 고졸자의 취업기회를 확대했다.

또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선재판매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불리한 이용약관 변경을 예방하기 위해 이용약관 변경 시 변경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중요전기통신설비 설치 승인 심사기준을 구체화하여 심사기준의 예측성을 높였다. 끝.

더 평화롭고 안전한 세계! 글로벌 코리아가 새로운 지평을 열어갑니다.

< 참고1 >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1] 취약계층 요금감면 서비스 및 대상자 확대(안 제2조제2·3항)

- (개정사유) 장애인, 저소득층 등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제공범위 확대를 위해 요금감면 서비스 추가 지정 및 대상자 확대 필요
- (개정내용) ①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에 인터넷전화\*를 추가하고, ② 차상위계층 요금감면 대상자에 양육수당 수급자와 장애인연금 수급자를 포함

\* 인터넷전화 가입자는 1,072만명('11년말)으로 총가구수(1,738만) 대비 점유율이 61.6%에 달함

- (기대효과) 인터넷전화 서비스 요금감면 및 통신요금 감면대상자 확대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비 부담 경감
- 인터넷전화 사용 77만 가구가 연 215억원(가구당 27,922원), 양육수당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 55천명이 연 57억원(1인당 103,636원)으로 연간 총 272억원의 감면효과 발생

### 2] 설비 미보유 별정통신사업 기술인력 등록요건 완화(안 별표2)

- (개정사유) 설비 미보유 별정통신사업자 등록 시 기술계 자격자(기술사, 기사, 산업기사)로 제한한 기술인력 요건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완화 필요
- (개정내용) 자격 취득이 상대적으로 쉽고, 사업을 영위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검토된 기능계 자격자(기능장, 기능사)를 기술인력 요건에 추가

- (기대효과) 설비 미보유 별정통신사업자(별정2호, 별정4호)의 등록 부담 경감으로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하고 고졸자의 취업기회 확대\*도 기대

\* '10년도 기능계자격증 합격자 총 40,687명 중 32,637명(80.2%)이 만 16~18세(고등학생에 해당)

### 3] 무선재판매 사업자의 이용약관 변경등록(안 제31조제1항)

더 평화롭고 안전한 세계! 글로벌 코리아가 새로운 지평을 열어갑니다.

- (개정사유) 별정통신사업 등록 시 이용자 보호 관련 내용이 포함된 이용약관을 제출하고 있으나, 약관 변경 시에는 재등록에 관한 규정이 없어 등록시점과 다른 부당한 약관에 대한 관리 수단 마련 필요
- (개정내용) 별정통신사업자 중 무선재판매 사업자가 이용약관을 변경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전파관리소)에 변경등록 하도록 함
  - 별정통신사업 등록 시 이용약관을 제출토록 한 입법취지를 고려하되, 규제를 최소화하고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특성을 감안하여 MVNO에 한해 적용
- (기대효과) MVNO가 이용자에게 불리한 이용약관 변경을 예방

#### 4 이용자 피해 확인 절차 마련(안 제44조, 별표5)

- (개정사유) 사업자가 이용자의 이익저해 행위(무단가입, 부당과금 등)를 한 경우, 이용자가 피해사실을 인식하고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 보완 필요
- (개정내용) 원상회복에 필요한 자료 보존과 이용자에 대한 피해사실 통지를 시정조치 사항에 추가하고, 그 이행기간을 신설
- (기대효과) 이용자가 피해사실을 신속히 확인할 수 있어 효과적인 이용자 권리 구제와 사업자의 자발적인 손해배상을 촉진

#### 5 중요전기통신설비 설치승인 심사기준 구체화(안 제51조의2제3항)

- (개정사유) 기간통신사업자는 중요한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려면 방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심사기준이 '전기통신설비의 기술적 특성 등'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제시할 필요
- (개정내용) 심사기준을 '사업계획의 타당성, 전기통신설비 보안대책의 적정성, 국내외 기술기준과의 적합성' 등으로 구체화 하여 규정
- (기대효과) 중요전기통신설비의 설치승인을 요청하는 사업자에게 심사기준의 예측성 제고

더 평화롭고 안전한 세계! 글로벌 코리아가 새로운 지평을 열어갑니다.

< 참고 2 >

## 요금감면 신청절차 간소화 설명자료

### □ 요금감면 절차간소화 전·후 비교표

구분	종 전	변 경	비 고
신청 서류	○ 개별기관에서 발급받은 자격서류를 제출 - 매년 관련 서류제출	○ 별도 자격서류 제출없이 신분증만으로 감면신청 및 확인 - 매년 서류제출 불필요	
신청 장소	○ 이통사 대리점 내방	○ 이통사 대리점 내방 ○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내방 ○ 주민서비스 포털(www.oklife.go.kr)	온라인 신청시 공인인증서 필요

### □ 인터넷을 통한 요금감면 신청

- OK주민서비스 포털(www.oklife.go.kr)을 통해 요금감면 신청

